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63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김소희·조경태·인요한

강대식 · 김상훈 · 김선교

김 건 · 김성원 · 우재준

권영세 • 박수영 • 박덕흠

강승규 • 백종헌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,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.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,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,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·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,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2명을"을 "3명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교육부 장관이"를 "교육부장관 및 기후환경부장관이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기후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·조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4. 기후환경부

제40조제1항 중 "자연환경"을 "기후변화 대응, 자연환경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9조(부총리) ① 국무총리가 특	제19조(부총리) ①		
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			
기 위하여 부총리 <u>2명을</u> 둔다.	<u>3명을</u>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	③		
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.	-교육부장관 및 기후환경부장		
	관이		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⑥ 기후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		
	대응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		
	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		
	관을 총괄・조정한다.		
제26조(행정각부) ① 대통령의 통	제26조(행정각부) ①		
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			
다.		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		
<u>14. 환경부</u>	<u>14. 기후환경부</u>		
15. ~ 19. (생 략)	15. ~ 19. (현행과 같음)	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
제40조(환경부) ① 환경부장관은	제40조(환경부) ①		
<u>자연환경</u> , 생활환경의 보전, 환	기후변화 대응, 자연환경		
경오염방지, 수자원의 보전ㆍ이			
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			
를 관장한다.			

② · ③ (생 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